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12. 1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1월 12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2015.1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갑수)

가. 제안이유

- 중앙부처 정보화 통합추진으로 신규사업 감소 등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며,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자 함.

나. 주요내용

- 실적이 저조한 정보화추진위원회 폐지(안 제8조~제14조)
- 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 알기쉬운 용어 및 중복사항 정비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기영)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규정으로 상위법령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단일화하고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일반주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 안 제2조제5호 및 안 제4조는 “법”의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리 하였으며,

현 행	변 경
기술·역무 기타	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수립·시행하여야	수립하여야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시행계획	기본계획

- 안 제6조는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현행 조례에서는 “임명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 형식을 취했으나 “법”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정함으로써 정보화 책임관의 위상을 정립하고 소명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그 밖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등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96 호
----------	--------

제출연월일 : 2015.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중앙부처 정보화 통합추진으로 신규사업 감소 등에 따라 심사기능의 위원회 목적이 다소 상실되어 실적이 저조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였으며, 구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적이 저조한 정보화추진위원회 폐지(안 제8조~제14조 삭제)

나. 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다. 알기 쉬운 용어 및 중복사항 정비(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심사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원안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9.03. ~ 2015.9.23.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기술·역무 기타”를 “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으로,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화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고 구청장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연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으로서”를 “효율적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를 “임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3장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 기술, 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p> <p>6. "정보화책임관(Chief Information Officer)"이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기술, 서비스 및 그 밖에 ----- -----.</p> <p>〈삭 제〉</p>

제7조(지역정보화 추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장 정보화추진위원회

〈삭 제〉

제8조(설치)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삭 제〉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 정보화 정책 또는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언론계·산업체의 장과 정보화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연구원, 구의회 의장이 추
천하는 구의원, 업무관련 국·과장
중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로 정보화 추진 자문위원을 둘 수 있
다.

제11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
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

〈삭 제〉

〈삭 제〉

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처리와 관련,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심의에 참여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삭 제>